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교진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66호, 2024.12.30.시행)된 「오피스텔 건축기준」에서 오피스텔 면적에 따른 바닥난방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대형평수 오피스텔에서도 실거주가 가능해져 이로 인한 학생 유발을 고려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 범위를 수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개정(법률 제21722호, 2026.12.3.시행)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과 관련해 현금 납부 산정기준, 납부 및 부과방법, 용도 등 세부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이를 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개정된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부합하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는 오피스텔의 범위를 수정함(안 제1조의2)
- 나.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산정 기준, 납부 방법, 용도, 납부시기 등을 규정함(안 제5조의4)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규제심사 예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호 중 “초과 120제곱미터 이하일”을 “초과일”로 한다.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 비용 현금 산정기준 등) ①

법 제4조제7항2호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개발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 시도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산정한다. 단, 그 범위는 학교용지부담금 범위 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 수 및 학급 수
2. 학교용지 매입비용
3. 학교시설 설치비용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사업시행자로부터 납부받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해야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기금을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시설 설치 용도에만 사용하여야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분양공급계약체결 이전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현금 납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오피스텔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오피스텔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이 영 시행 전에 허가·인가 또는 승인받은 계획을 변경하는 계획을 포함한다)에 관한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오피스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을 말한다.		제1조의2(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오피스텔) -----		
1.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u>초과</u>		-----		
<u>120제곱미터 이하</u> 일 것		-----		
2. 3. (생략)		-----		
		1. ----- <u>초과</u>		
		<u>일</u> -----		
		2. 3. (현행과 같음)		
		<u>제5조의4(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u>		
		<u>시설 설치 비용 현금 산정기준</u>		
		<u>등) ① 법 제4조제7항2호에 따</u>		
		<u>라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시설</u>		
		<u>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u>		
		<u>납부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개발</u>		
		<u>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사</u>		
		<u>항을 고려해 시도교육감과 협의를</u>		
		<u>거쳐 산정한다. 단, 그 범위는</u>		
		<u>학교용지부담금 범위 내로 하는</u>		
		<u>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간</u>		
		<u>협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u>		
<u><신 설></u>				

1. 개발사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 수 및 학급 수

2. 학교용지 매입비용

3. 학교시설 설치비용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산정
한 비용을 사업시행자로부터 납
부받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
9조에 따른 별도의 기금을 설치
하여 운용해야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기금
을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시설
설치 용도에만 사용하여야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분양공급계약체결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현금 납부 등에 관
해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연 락 처	(044) 203 - 6641